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48
----------	------

2017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7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7년 10월 24일
- 라. 상정일 :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 제안이유

- 가.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7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유스호스텔은 쾌적한 숙식환경 제공,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협력 및 양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역사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료 수입을 통한 운영이라는 면에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능률성 또한 현저히 요구됨.
- 이에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현재 위탁법인(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운영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 개관일자 : 2006. 2. 23.
- 시설규모 : 연면적 6,483m²(지상 7층, 지하 1층)
- 지원시설 : 객실 50개, 강당 1개, 회의실 4개, 식당 1개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 (2018.1.1 ~ 201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14백만원('17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33백만원, 물건비 1,232백만원, 경상이전 177백만원, 자본지출 312백만원, 사업비 76백만원, 사업외지출 529, 예비비 5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재계약타당성 등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상위법¹⁾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흥사단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²⁾)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의 개요 >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 개관일자 : 2006. 2. 23.
 - 시설규모 : 연면적 6,483m² (지상 7층, 지하 1층, 부지면적 17,223m²)
 - 지원시설 : 객실 50개(수용인원 312명), 강당 1개, 회의실 4개, 식당 1개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 2년 (2018. 1. 1 ~ 2019.12.31)
- 위탁사무 내용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운영,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314백만원(2017년)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 현황 >

- 2006. 2. 26. : 1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신규 공개모집)
- 2009. 2. 19. : 2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재계약)
- 2011. 2. 19. : 3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재위탁 공개모집)
- 2014. 4. 1. : 4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재위탁 공개모집)
- 2015. 3. 1. : 5차 위탁협약 체결 (사)홍사단(재위탁 공개모집)

○ 평생교육국은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이 청소년의 숙식제공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료 수입을 통한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홍사단 현황 >

○ 재계약 대상 : (사)홍사단

- (사)홍사단은 1963년에 홍사단 아카데미를 창립
- 청소년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국민의 자질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 자산보유현황 : 27,357,438천원
-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직원	운영시설	회원수	비고
인원수	25,261	10	20	231	25,000	

○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제공, 국내·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생활지도 및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전문성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은 청소년이용률을 최소 60%이상이 되도록 하며, 80%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2017년 69.2%로, 청소년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최소 60% 기준으로 8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률 >

(2017.7.31.기준)

구 분	사 업 실 적					
	2015년	구성비	2016년	구성비	2017년	구성비
총계	218,978명	100%	224,652명	100%	122,324명	100%
유아	0명	0%	46명	0%	0명	0%
청소년	143,476명	65.6%	149,008명	66.3%	84,768명	69.2%
성인	75,502명	34.4%	75,598명	33.7%	37,556명	30.8%

※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2017년 4월~6월, (주)한국정보경영평가)를 보면, 89.4점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로체험 프로그램, 친환경유통센터와 약정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요약 >

사업인프라 (25)	사업활동 (1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15)	사용자만족도 (20)	사업성과 (30)	합계 (100)
21.6	8.4	15.0	17.4	27.0	89.4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 보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되고, 보고로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위배됨과 아울러 재계약시 동의안을 의결받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³⁾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제출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계획 >

- | | |
|-------------------|-----------------------|
| - 2017년 4~7월 | 위탁운영기간 사업실적 종합성과평가 실시 |
| - 2017년 8. 7.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 - 2017년 8. 23.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 2017. 9월말 |
| - 시의회보고 | : 2017. 11월 |
| - 재계약 위탁운영 협약체결 | : 2017. 12월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48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7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유스호스텔은 쾌적한 숙식환경 제공,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협력 및 양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역사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료 수입을 통한 운영이라는 면에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능률성 또한 현저히 요구됨
- 이에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현재 위탁법인(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운영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 개관일자 : 2006. 2. 23.
- 시설규모 : 연면적 6,483m²(지상 7층, 지하 1층)
- 지원시설 : 객실 50개, 강당 1개, 회의실 4개, 식당 1개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 (2018.1.1 ~ 201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14백만원('17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33백만원, 물건비 1,232백만원, 경상이전 177백만원, 자본지출 312백만원, 사업비 76백만원, 사업외지출 529, 예비비 5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재계약타당성 등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진영 (☎2133-4121)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사업내용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관리·운영

- 위 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 시설규모 : 연면적 6,483m²(지상 7층, 지하 1층)
- 주요사업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식편의 제공,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
- '17년예산 : 3,314백만원

○ 위탁 추진경과

- '06.02. ~ '09.02. : 1차(3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 '09.02. ~ '11.02. : 2차(2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 '11.02. ~ '14.03. : 3차(3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 '14.04. ~ '15.02. : 4차(1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 '15.03. ~ '17.12. : 5차(3년), 사단법인 흥사단

□ 성과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주)한국정보경영평가
- 평가기간 : 2017. 4 ~ 6월
- 대상기관 : 서울유스호스텔 등 12개 시립청소년시설
- 평가방법 : 평가단(전문 평가위원 3인 내외 구성) 현장평가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평가결과

○ 평가 결과 요약

사업인프라 (25)	사업활동 (1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15)	사용자 만족도 (20)	사업성과 (30)	합계 (100)
21.6	8.4	15.0	17.4	27.0	89.4

○ 사업인프라

중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1에 근거하여, 센터장을 보좌하는 지배인을 두며 지원팀, 서비스팀, 청소년팀으로 구성됨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를 5명 배치하여 준수함 -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총 27명 중 정규직 16명, 계약직 11명으로 정규직 종사자 비율 25%(59.3%) 기준을 준수함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5-'16년 종사자 인권교육 연수를 실시함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5조)에 의해 시설장 자격요건 및 상근의무 이행 준수를 충족함 - '15-'17년 종사자는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임면 절차를 준수함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기간 미준수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는 '15년 채용 종사자의 경우 임면 후 15일 이내, '16~'17년 채용 종사자의 경우 임면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5건 미준수함 - 종사자 채용시 필수 구비서류 누락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서' 2건, 주민등록 초본(병적증명) 4건, 졸업증명서 2건 누락 - '16년 청소년시설 컨설팅 결과 종사자 근로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시설 자체 운영규정 내 인사위원회 규정 미흡 - 시설종사자 공개 채용시 인사위원회는 외부 청소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함에도 계약직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 - 향후 정규직과 계약직 구분 없이 시설종사자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외부 청소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을 진행할 예정임
2	회계관리 적정성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314,380,800원, '16년 326,994,500원 '17년

중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331,326,248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기명식단체계약으로 안재환 포함 총 14명, '16-17년 직위식단체계약으로 시설대표 포함 총 15개 직위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함 승강기, 정수기, 복합기 등 시설·안전 관리와 월 유지 보수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사유서,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고 있음 '15년 시설 조함관리 외주용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실시함
	2-②	예·결산 적정성	2.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5-'17년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세출을 모두 본 예산에 계상함 '15년 ○○ 공인회계사 감사반 '16년 ○○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결산감사를 실시함 예산 및 결산 공고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일 이내에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나 '15년 예산 공고가 홈페이지에 누락됨
3 자원 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3-①	재산 및 물품관리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9월 '16년 9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회 실시 하였음 「청소년시설 관라운영매뉴얼」에 따라 재물조사목록표에 입회자 또는 담당자의 확인 진행 하에 정기 재물조사 관리를 진행하여 소모품 전환과 불용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함
	3-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관련하여 기본보상손해(화재, 풍수설해, 테러손해, 구내포발담보), 추가보상손해(신체손해담보, 화재대물배상)에 가입함 서울유스호텔을 비롯하여 실내 집회장, 식당 및 주방, 자가취사장, 양호실, PC방 및 컴퓨터실, 옥외 주차장, 엘리베이터, 목욕탕에 해당하는 영조물손해 배상공제에 가입하였으며 '16년 도시가스(취사용/난방용), 특성화시설, 음식물에 대한 내역을 추가함 '15-'17년 종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자체점검, 가스점검, 보일러점검, 방화순찰 등을 매일 단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3-③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가치제고	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17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 2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유스호텔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고 논의함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남산한바퀴, 남산숲 자연학교, 대외협력 사업 등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분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함
총합			25	21.6	

○ 사업활동

종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사업계획 집행수준	1-① 사업계획 적정성	1.5	1.2	· '15년 연간운영 계획에 근로자의 급여·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이 표기 되어있음
					· '16-'17년 위수탁 협약서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지 후생등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내 해당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1-②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	2.0	· 사업계획서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안전관리 계획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16-'17년 종합운영계획(안) 내 시설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2-①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도	3.5	2.8	· '15년 사업운영계획서 내 연도별 자체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16-'17년 사업운영계획서 내 연도별 사업 및 운영 평가와 만족도 평가 등 자체 성과평가 계획이 수립 되어있음
					· 중장기 자체 성과평가계획의 수립은 미흡함
		2-② 이해 관계자 협 조체계 구축	1.5	1.5	· '16년 사업운영계획서 내 세부 프로그램별 계획 횟수 및 참여인원, 만족도 설문지 배포 등을 통한 사업 목표의 측정 가능한 평가 지표를 수립함
					· '15-'16년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개선 내용 및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함
					· '15-'17년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서울유스호스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함
		2-③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1.5	0.9	· '15-'17년 지역사회 학교와 협력하여 일일호텔리어, 남산한바퀴 등 연계 사업 수행
					· 지역 청소년수련관 및 직업체험지원센터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배낭여행사업, 일일호텔리어 사업등을 진행하였음
					· '16-'17년 종합운영계획(안) 내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총합			10	8.4	· '15-'16년 홍보관련 추진 상황에서 홍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음
					· '15-'16년 결과보고서 내 홍보효과에 대한 내용이 미흡 하여 홍보효과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15-'16년 홍보계획서에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우며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발전방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 노력

중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프로그램 질적수준 제고	1-①	성과목표의 적절성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17년 종합운영계획(안) 내 사업목표와 대상, 특징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있음 청소년의 진로탐색이나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 국제 교류등 현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과 목표를 계획하여 진행함 		
		1-②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5.0	5.0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수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2016년 서울시교육 복지종합지원센터 표창장 </td> </tr> </tbody> </table>	연도	수상 내역
연도	수상 내역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2016년 서울시교육 복지종합지원센터 표창장 							
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2-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함 		
총합				15	15			

○ 사용자 만족도

중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시민 만족도 조사	1-①	시민 만족도 조사	15.0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15점 만점 환산점수는 13.4점으로 나타남
2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2-①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사용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접수 받지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각 시설별 민원함 제작 예정임
총합				20	17.4	

○ 사업성과

종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프로그램 개발	1-①	프로그램 개발 적정성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대비 '16년 3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16년 대비 '17년 4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청소년이 남산 주변을 탐방하여 남산의 지리적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산 한 바퀴"와 청소년 스스로 여행계획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인 서울배낭여행을 개발함
		1-②	프로그램 집행률	7.5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종합운영계획(안) 내 계획 프로그램 9개중 8개가 운영되었으며 집행률은 88.9%임 · '16년 계획 프로그램 12개 대비 실제 운영 프로그램은 10개이며 집행률은 83.3%임
2	프로그램 운영	2-①	청소년 이용률	7.5	4.5	<p>[20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이용률 $(143,476/218,978) \times 100 = 65.5\%$ · 특화 프로그램 비율 $(2/8) \times 100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용자 218,978명 - 청소년 이용자 143,476명 - 전체 프로그램 8 - 특화 프로그램 2 <p>[201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이용률 $(149,008/224,978) \times 100 = 66.2\%$ · 특화 프로그램 비율 $(2/10) \times 100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용자 224,978명 - 청소년 이용자 149,008명 - 전체 프로그램 10 - 특화 프로그램 2
		2-②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6년 종합운영계획(안) 내 사업 목록과 진행된 프로그램이 일치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시의 승인을 받아 운영됨 · '15-17년 "호스텔링 투게더", "해외교류 협력사업", "서울배낭여행 리더의 조건" 등을 기획하여 야간시간대 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함 · "호스텔링 투게더", "서울배낭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공휴일에 편성함 · '15-'17년 "호스텔링 투게더"에서 외국 청소년들이 서울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통해서 교류를 활성화 했으며 '17년에는 해외 교류 협력 사업을 계획하여 국내 청소년의 해외교류 봉사활동을 진행함
총합			30	27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서울유스호스텔 재계약 협약 체결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가 적정으로 결정되어 시의회 동의 득한 후, 연내 재계약 협약 체결

○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

-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